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명 : 어르신주거복지시설(양로) 운영
- 사업내용 : 무료 양로시설 5개소 운영 지원(시립 1, 법인 4)
- 추진근거 : 「노인복지법」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(비용보조)
「노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14조부터 제15조의 2

□ 전용금액 및 사유

- 전용금액 : 총 20,000천원
- 전용사유 : 수락양로원 위험물 용도폐지를 위한 비용 및 양로시설 현장 평가위원 수당 등 부족분 발생
 - 운영 종료('23.12.31.)된 시립수락양로원의 위험물 저장소 용도폐지를 위한 유류탱크 청소 및 폐기비용(12,280천원) ※ 노원소방서 예방과-12217호와 관련 안전조치 요청
 - 보건복지부 '24년 사회복지시설 현장평가 실시에 따른 현장평가단 수당 지급 등(7,720천원)
 - 법인 양로시설(4개소) 운영보조금 잔액 발생함에 따라 '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(307-10)' 예산 342,553천원 불용 예상

(단위 : 천원)

예산과목					예산액	전용변경 요구액		변경 후 예산액
정책	단위	세부	편성목	통계목		증	감	
어르신 복지수준 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	어르신 요양 인프라 구축	어르신 주거복지 시설 운영 (양로)	민간 이전 (307)	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(10)	3,862,277	-	20,000	3,842,277
			일반 운영비 (201)	사무 관리비 (01)	-	20,000	-	20,000

□ 향후 계획

- 양로시설 운영 : '25. 1월~